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1.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대상안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43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제4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나.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6명

다. 발의일자: 2021년 12월 8일

라. 회부일자: 2021년 12월 8일

다.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2.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 규칙의 목적 (안 제1조)
 -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안 별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규칙의 목적 (안 제1조)
 -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규칙안은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독립성·자율성을 높이려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 안 제2조는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별표를 따르도록 하고,
-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으며,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의원면직 제한대상자를 의원면직 허용하거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문책에 관하여 규정함.

○ 검토 결과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징계

및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 규칙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3
----------	-----

발의년월일: 2021년 12월 8일

발의자: 김길자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다.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라.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별표)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 관련)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각,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교통사고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바. 폭력, 가혹행위 사. 기타 품위손상				○	○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 ○ ○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 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 ○ ○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 반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 반영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			○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 ○ ○ ○	
4.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 ○ ○ ○ ○ ○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 ○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 ○ ○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6. 소송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2
----------	-----

발의년월일: 2021년 12월 8일
발의자: 김길자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다.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규칙」 제4조의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